

국내기업의 해외 은행업 진출에 대한 검토

서 병 호

2011. 4



한국금융연구원
KOREA INSTITUTE OF FINANCE

머 리 말

최근 신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한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글로벌경영을 위한 경험 및 네트워크의 부족으로 인해 글로벌화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또한 국내은행의 경우 규모 및 외화조달 능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해외에서 대형 현지은행에 대한 인수·합병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내은행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 국내은행과 국내기업이 공동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국내은행과 국내기업의 해외사업 공조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자금조달과 인수·합병 등을 위해 외국계은행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던 국내기업과의 공조관계 구축을 통해 국부의 유출을 줄일 수 있으며, 해외사업에 있어서의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국내은행의 노하우와 국내기업의 네트워크를 접목 시킴으로써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이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국내기업의 해외은행업 영위 자체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국내기업의 입장에서 해외은행업 진출에 따른 장단점이 무엇인지, 해외 은행업 진출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해외 은행업 진출을 위한 법적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과거 사례는 있는지,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국내 일반기업의 해외 은행업 영위에 따른 기대효과, 국내 일반기업의 해외 은행업 영위와 관련된 국내 및 해외 관련규정, 국내 및 해외 일반기업의 은행업 영위 사례 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국내기업의 해외 은행업 진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국내기업의 해외 은행업 진출에 따른 기대성과를 창출하고 해외 은행 경영에 따라 수반될 수도 있는 잠재위험을 완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보고서 작성을 담당한 한국금융연구원의 서병호 박사와 자료수집 및 처리를 도와준 황진훈 연구원, 박정선 연구비서의 노고에 감사한다. 그리고 내부회의에서 좋은 논평을 준 연구위원들과 심사과정에서 좋은 심사평과 제안을 해준 익명의 심사자들에게도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11년 4월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김 태 준

목 차

요 약

I. 문제의 제기	1
II. 일반기업의 해외 은행업 영위에 따른 효과	3
1. 일반기업의 해외 은행업 영위에 따른 긍정적 효과	3
2. 일반기업의 해외 은행업 영위에 따른 리스크	6
III. 일반기업의 해외 은행업 영위와 관련된 규정	9
1. 국내 관련규정	9
2. 진출대상국의 관련규정	12
3. 시사점	25
IV. 일반기업의 은행업 영위 사례	27
1. 국내기업 사례	27
2. 해외기업 사례	33
V. 시사점	46
참고문헌	49
Abstract	51

그림 목 차

〈그림 1〉 한화 헝가리은행 소유구조	32
〈그림 2〉 GMAC Bank 소유구조 및 모회사와의 관계	34
〈그림 3〉 GMAC Bank의 자산 및 증가율 추이	34
〈그림 4〉 GMAC Bank의 당기순이익 추이	35
〈그림 5〉 Ally Bank의 소유구조	36
〈그림 6〉 Sony Bank의 소유구조 및 모회사와의 관계	37
〈그림 7〉 Sony Bank의 자산 및 증가율 추이	38
〈그림 8〉 Sony Bank의 당기순이익 추이	39
〈그림 9〉 Egg Bank의 당기순이익 추이	41
〈그림 10〉 Egg Bank의 총자산 추이	42
〈그림 11〉 Japan Net Bank의 자산 및 증가율 추이	44
〈그림 12〉 Japan Net Bank의 당기순이익 추이	45

요 약

I. 문제의 제기

- 최근 우리금융 등의 민영화를 앞두고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장악을 견제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대두
 - 은행산업은 자금중개자로서 모든 산업에 대한 각종 신용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외국자본이 은행산업을 완전히 장악하면 국가경제도 종속될 소지
- 그러나 국내기업이 국내에서 은행을 경영할 경우 은행의 기업규율기능 약화, 공정경쟁 저해, 동반 부실화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정성 증대 등의 문제가 있어 은산분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경우 모니터링 대상(기업)이 모니터링 주체(은행)를 지배함에 따라 은행의 기업규율기능이 약화
 - 또한 재벌의 기간산업 장악에 따른 공정경쟁 저해, 산업과 은행의 동반 부실화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증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국내 은행법 제16조에서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소유를 최대 9%로 제한
- 반면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국내법상 금지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검토

- 국내기업이 해외은행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기업규율기능 약화, 공정 경쟁 저해, 시스템리스크 등의 문제가 거의 없음.
- 은행법은 국내은행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법상 해외은행에 대한 소유규제는 없음.

II. 일반기업의 해외 은행업 영위에 따른 효과

1. 일반기업의 해외 은행업 영위에 따른 긍정적 효과

■ 기업이 해외에서 은행업을 영위할 때 기존 네트워크 및 노하우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비용 및 수익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기존의 인력, 정보, 설비 등의 공동이용을 통해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판매망 상호이용, 연계판매, 상호구매 등을 통해 수익 시너지도 창출할 수 있음.
- 또한 우수한 경영기법과 기술평가능력 등을 보유한 기업이 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영 노하우 및 기술평가능력의 활용을 통해 기업금융 등에서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기업이 특정국가로의 진출을 고려하고 있을 때 은행업으로의 진출이 해당 국가로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음.

- 은행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각종 정보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인수·합병 매물을 발견하거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경우 공기업 매각 등에 참가할 수 있음.

■ 또한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거나 수익의 변동성이 큰 기업의 경우 은행업 진출을 통해 수익기반 다각화 및 수익변동성 완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은행업의 경우 리스크관리만 철저히 한다는 전제하에 예대마진을 통해서 안정적 현금흐름을 제공

■ 다국적기업으로서 자금관리서비스(cash management service)에 큰 비용을 지불하는 기업의 경우 해외 은행업 영위를 통해 동 부문을 내재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부유출 문제도 완화

2. 일반기업의 해외 은행업 영위에 따른 리스크

■ 기업의 경우 은행업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데다 은행업과 일반 산업과의 경영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해외에서 은행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기가 어려움.

- 국내기업은 은행을 경영한 경험이 별로 없으며, 은행은 일반 기업들과 달리 매출확대보다 리스크관리가 더욱 중요함.

■ 은행은 어느 나라에서든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은행업을 영위할 경우 각종 규제 및 공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

- 은행의 경우 공적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각종 규제 및 공시의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현지 규정을 어길 경우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과 금감원의 감독을 추가로 받게 되며, 이에 따른 법적위험도 있음.

■ 또한 글로벌 경기악화로 국내와 해외에서의 경영여건이 동시에 악화될 경우 은행의 부실이 본사로 전이될 수 있음.

- 은행의 경우 대중으로부터 예금을 받기 때문에 은행업 면허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어려워질 경우 대주주가 지원을 약속하는 것이 일반적임.
- 은행은 통상 불경기에 부실화되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국제적 신용경색 상황에서 해외은행과 모기업이 동시에 어려워지면 대주주의 지원약정이 부담으로 작용

Ⅲ. 일반기업의 해외 은행업 영위와 관련된 규정

1. 국내 관련규정

■ 국내기업이 해외에 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외국환은행과 한국은행에 사전적으로 신고해야 함.

- 국내 비금융회사는 해외직접투자 시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해외직접 투자의 신고 등)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사전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음.
- 국내 비금융회사가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15조의2(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할 의무

■ 국내기업은 해외에 은행을 설립한 이후에는 외국환은행에 추진경과를 보고해야 하며, 한국은행과 금감원에는 경영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

-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한 국내 비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보고서 등의 제출)에 따라 외화증권취득보고서와 송금·투자보고서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연간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할 의무
-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한 국내 비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15조의2(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에 따라 매분기 역외금융회사의 설립 및 운영 현황 등을 다음 분기 첫째 달 2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의무

■ 국내기업이 해외에 설립한 은행이 다시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나 현지법인 설립이나 국내은행 인수는 불가

■ 국내기업이 금융계열사를 통해 해외 은행업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계열사의 업권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거나 사후보고를 해야 함.

- 국내기업이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해외 은행업에 진출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보고사항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의무
- 보험회사가 보험업이나 집합투자업 외의 사업을 외국에서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제115조(자회사의 소유)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자회사의 소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
- 국내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새로이 편입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6조(자회사 등의 편입승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

2. 진출대상국의 관련규정

1) 미국

■ 미국의 경우 1956년 이전까지 일반 기업의 은행업 영위가 가능했으나 1956년 은행지주회사법의 제정으로 인해 은산분리 원칙이 생김.

- 1933년까지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소유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었으며, 1933년 은행법(Banking Act of 1933) 제정을 통해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경우 연방은행으로부터 의결권 행사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규정
- 1956년에 제정된 은행지주회사법에서는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를 은행지주회사로 정의하였으며, 동 회사는 은행업 및 관련 사업만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배를 금지

■ 이후 1987년 산업대출회사(Industrial Loan Company, 이하 'ILC')에 한하여 일반기업의 은행에 대한 소유·경영이 가능하였으나 2010년 금융개혁법에 따라 ILC에 대한 신규 인가가 금지되어 국내기업이 미국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해짐.

- 1987년 경쟁적평등은행법(Competitive Equality Banking Act)에서 州 인가(state-chartered)를 받은 연방예금보험기구(FDIC) 부보기관으로서 정기예금, 저축성예금(CD 포함), 상업대출, 모기지, 신용카드, 소비자대출 등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광범위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는 ILC를 도입

- 그러나 2006년 미국 유통업체인 Walmart의 ILC 설립신청을 계기로 ILC에도 은산분리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2010년 제정된 금융개혁법에 따라 일반 기업의 ILC에 대한 신규 인가가 금지되면서 미국의 은산분리 원칙이 강화

2) 아시아

- 일본에서는 역사적으로 은행이 재벌(zaibatsu)의 주력산업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군정의 재벌해체를 계기로 은산이 분리됨.
 - 19세기 형성된 일본의 4대 재벌 Mitsubishi, Mitsui, Sumitomo, Yasuda는 지주회사 밑에 은행을 주력 자회사로 두었으며, 그 자본력을 바탕으로 군수산업, 항공업, 무역업, 철강업, 자동차산업, 섬유산업, 건설업 등을 동시에 영위
 -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군정은 전쟁포로와 식민지 노동자들을 이용하여 무기를 생산했던 일본 재벌들을 해체하기로 결정하고 1946년 두 차례에 걸친 재벌해체 계획을 추진
 - 이후 은행법에서는 은행이 일반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고 일반 기업은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금액을 은행에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이에 따라 은행을 축으로 하는 기존의 재벌체계가 붕괴
- 2000년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본 감독당국은 비금융 주력자의 은행업 영위를 위한 요건을 마련했으므로 국내기업이 일본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것은 가능

- 일본 금융감독청은 2000년 6월 『타 업종에 의한 은행업 진입 등 새로운 형태의 은행업에 대한 인가 및 감독지침』을 수립
- 동 지침에서는 은행과 본사의 독립성 확보, 본사로의 사업리스크 차단, 고객정보 보호, 자산구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 등을 의무화하는 대신 일반 기업의 특화은행 설립을 허용

■ 중국에서 중국기업이 중국 은행을 소유하는 데에는 법적 제약이 없으나 외자은행관리조례에 따라 외국기업은 중국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음.

- 중국 외자은행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외국독자은행을 설립하려는 주주는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그 중에서 단일주주나 대주주는 반드시 상업은행이어야 함.
- 또한 외자은행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외합자은행을 설립하려는 주주도 반드시 상업은행이어야 하며, 중국 은행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투자는 단일 외국인 20%, 전체 외국인 25%로 제한됨.

■ 인도의 경우 은산분리 규정은 없으나 대주주와 외국인에 대한 지분한도가 있음.

- 인도 은행법 제31조(Regulation of paid-up capital, subscribed capital and authorized capital and voting rights of shareholders) 2항에 따라 은행의 어떤 주주도 전체 투표권의 45% 이상을 행사할 수 없음.
- 인도의 경우 외국인은 현지은행 지분을 5%까지만 보유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에 의한 현지은행 설립 및 인수는 불가

■ 인도네시아에서는 일반기업의 은행 소유가 허용되지만, 국내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인과 합작할 필요

- 인도네시아 은행법 22조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상업은행은 인도네시아 시민 또는 인도네시아 시민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설립해야 하므로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의 경우 인도네시아인이나 인도네시아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서만 은행을 소유·경영할 수 있음.

■ 베트남에는 은산분리 규정이 없어 일반기업의 은행소유가 가능하지만, 외국인 차별규정으로 인해 국내기업이 베트남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

- 베트남 은행법시행령에 따라 지점, 합작, 현지법인 등의 방식으로 베트남에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국자본은 은행으로 제한됨.

■ 홍콩에는 은산분리 및 외국인 차별규정이 없어 국내기업의 현지은행 소유가 가능하나 현지 감독당국의 적부심사를 통과할 필요

- 홍콩 은행법 제70조에 따라 홍콩 은행의 소유주에 대한 사전적 제한은 없으나 홍콩 감독당국의 적부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음.

■ 싱가포르에서도 국내기업의 은행업 영위가 가능하지만 일정한도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때마다 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

- 싱가포르 은행법 제15조에 따라 특정인이나 법인이 싱가포르은행 지분의 5%, 12%, 20% 이상 초과할 때마다 감독당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만,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지하지는 않음.

■ 카자흐스탄에는 은산분리 규정이 없어 일반기업의 은행소유가 가능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지분제한이 있음.

- 카자흐스탄 은행법 제17조에 따라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경우 지분을 50% 이상 소유할 수 없음.

■ 우즈베키스탄에도 은산분리 규정은 없으나 본국에서 예금수취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외국법인만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음.

- 우즈베키스탄 은행법 제15조에 따라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국에서 예금수취업무를 수행해야 함.

3) EU국가

■ EU의 은행조정지침(2nd Banking Coordination Directive 1989)에 의하면, 적격투자(qualifying investment) 또는 적격보유(qualifying holding)를 위해 주주의 자격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지만,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투자·보유한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약이 없음.

■ 따라서 EU국가들 중에서 독일과 영국 등 24개 국가에서는 일반기업의 은행소유가 가능하며,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등 3개국만 예외적으로 일반기업의 은행소유를 제한

- 27개의 EU국가 중에서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라트비아, 말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아일랜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 24개국에서는 일반기업이 은행지분을 100%까지 인수하여 경영할 수 있음.
- 반면 이탈리아와 룩셈부르크에서는 일반기업의 은행지분 보유에 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리투아니아에서는 일반기업의 은행지분 보유 자체를 금지하고 있음.

3. 시사점

-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에서는 은산분리가 엄격히 적용되지만 국내기업이 해외은행을 인수하거나 해외에서 은행을 설립하는 것은 가능
 - 단,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순간 한국은행과 금감원의 감독대상이 되기 때문에 규제비용 증가가 예상됨.
-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국가들은 은산분리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동 지역으로의 진출은 불가하며,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 규제 때문에 현지은행의 소유가 불가
- 대부분의 EU국가에서는 적격성 심사만 통과하면 국내기업이 은행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 인도네시아, 홍콩,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은행업 영위가 가능

IV. 일반기업의 은행업 영위 사례

1. 국내기업 사례

1) Daewoo Bank(현, KDB Hungary)

- 1989년 글로벌화 전략의 일환으로 동유럽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대우그룹은 산하 자동차, 조선, 증권 등과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헝가리에 합작은행인 Daewoo-MHB Bank를 설립
- Daewoo Bank는 대우자동차와의 연계영업을 통해 높은 시너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모기업 부도로 인해 매각됨.
 - Daewoo-MHB Bank는 1993년 증권사를 설립하고 1994년 리스사를 설립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원스톱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대우 자동차 및 대우조선과의 연계영업을 강화
 - 1995년 대우그룹의 헝가리신용은행 지분 전량인수에 따라 Daewoo Bank로 개명했으며, Daewoo Bank는 2000년말 기준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9.7%에 달하는 우량은행이었음.
 - 1999년 대우그룹이 부도난 이후 대우증권은 계열분리되었으며, 2000년 산업은행이 대우증권의 최대주주로 등극

2) LG Petro Bank

- 1995년 동유럽시장 진출기반 마련에 주력하던 LG는 현지 자금조달 및 금융업 확대를 위하여 폴란드에서 은행을 인수하기로 결정

- 동유럽과 서유럽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동유럽 최대시장인 폴란드에 은행을 설치함으로써 가전제품 등의 동유럽 진출과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자 하였으며, 현지 자금조달 및 브랜드 인지도의 상승 등을 기대

■ Petro Bank는 우찌(Lodz)시에 위치한 소형은행에서 전국에서 영업하는 중형은행으로 성장했으나 빅딜정책의 일환으로 매각

- LG가 인수할 당시 Petro Bank에는 전산시스템이 없어 경영현황도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전산시스템은 물론 인터넷뱅킹과 이트레이딩까지 구축
- 또한 ‘프로그레시브 당좌예금’, ‘환경예금’, ‘템포플러스’, ‘LG Habitat’ 등 신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면서 여신이 연평균 49% 증가
- 외환위기 이후 빅딜정책의 일환으로 LG는 LG Petro Bank를 포함한 금융산업을 포기했으며, LG Petro Bank는 2002년 Nordea Bank에 헐값으로 매각

3) Hanwha Bank Hungary

■ 1993년부터 그리스에서 아테네은행을 경영하던 한화는 1996년 동유럽 시장 진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헝가리에 은행을 설립

- 한화는 1993년 그리스에 22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던 Bank of Athens (자본금 1천만 달러)를 공개입찰 방식으로 인수했으며, 1996년 Bank of Athens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소재한 Banque Indosuez Hungary (프랑스 Indosuez S.A.의 자회사)를 인수

- 1998년 IMF 사태로 유동성이 어려워진 한화는 유럽의 모든 은행들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Bank of Athens만 매각에 성공하고 Hanwha Bank Hungary는 매각에 실패하여 지금도 소유하고 있음.

2. 해외기업 사례

1) GMAC Bank(현, Ally Bank)

- 2000년 GMAC(General Motors Acceptance Corporation)는 인터넷 전문은행인 GMAC Bank를 설립
 - 2000년 GMAC는 소매예금 수취를 통한 자금조달 비용의 하락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비즈니스의 확대를 위해 GMAC의 자회사 형태로 인터넷 전문은행인 GMAC Bank(법적으로는 ILC)를 설립
- GMAC Bank는 GM의 계열사로서 모회사의 높은 인지도와 고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높은 성장세를 시현했으나 서브프라임 사태를 계기로 대손비용이 급증하면서 공적자금이 투입됨.
 - GMAC Bank는 ILC로서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상품을 취급했으며, 2006~2010년 중 연평균(CAGR) 기준 37.02%의 고성장을 기록(2006년 199.4억 달러였던 총자산이 2010년에는 702.8억 달러로 증가)
 -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GMAC Bank의 부실채권비율도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대손비용 때문에 2008년과 2009년 대규모의 적자를 기록

- 2008년 12월 미국 재무성은 GMAC를 구제하기 위해 50억 달러 규모의 TARP 자금을 투입했으며, 그 결과 미국 재무성이 GMAC의 최대주주로 등극
- 2009년 5월 GMAC Bank는 브랜드이미지 개선을 위해 Ally Bank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2010년 5월에는 GMAC도 이름을 Ally Financial로 바꿈.

2) Sony Bank

■ 2001년 일본의 글로벌기업 Sony는 Sumitomo Mitsui, JP Morgan Chase와 함께 Sony Bank를 설립

- 2001년 Sony는 경험 및 네트워크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Sumitomo Mitsui Banking Co., JP Morgan Chase와 합작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인 Sony Bank를 설립하였고, 출자지분은 Sony 80%, Sumitomo Mitsui Banking Co. 16%, JP Morgan Chase 4%로 이루어짐.

■ Sony Bank는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연금보험 등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면서 높은 성장세를 시현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수익성이 악화된 이후 이전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Sony Bank는 2006~2010년 중 연평균(CAGR) 기준 21.11%의 고성장을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2006년 8,070억 엔이었던 총자산이 2010년에는 1조 7천4백억 엔으로 증가
- 일본경제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Sony Bank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수익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Sumitomo Mitsui Banking Co.와의 결별도 수익성에 악영향

3) Egg Bank

- 1998년 영국 최대의 보험사 Prudential은 은행업 진출을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인 Egg Bank를 설립했는데, 설립초기부터 고금리 예금상품의 제시와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 고성장을 기록
 - 지점영업비용의 절감을 바탕으로 고금리 예금상품과 저금리 대출상품을 제시하면서 2000년 고객수 100만명을 돌파했으며, 신용카드영업의 강화와 투자신탁상품의 판매확대 등으로 비이자수익 비중을 40%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2001년부터 흑자로 전환
- 그러나 프랑스 진출실패, 신용대출 대손비용의 증가, 신용카드 매출부진 등으로 Egg Bank는 2006년부터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결국 2007년 헐값으로 Citigroup에 매각
 - Egg Bank는 예대업무에서 기록한 손실을 신용카드 사업으로 상쇄하는 영업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프랑스 고객들은 영국보다 신용카드 사용률이 현격히 낮아 적자가 지속
 - 2000년 지분 21%를 런던에 상장시켰던 Egg Bank는 2006년 Prudential이 기타지분을 일괄매집하면서 완전자회사로 회귀
 - 2006년 시장매집 당시 시가총액 11억 파운드에 달했던 Egg Bank는 그 해 1억 파운드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2007년 5.7억 파운드의 가격에 Citigroup으로 매각

4) Japan Net Bank

- 2000년 일본의 대형 은행지주회사인 Mitsui Sumitomo Banking Co.가 금융 및 산업자본들과 공동으로 출자해 일본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인 Japan Net Bank를 설립
 - Mitsui Sumitomo Banking Co.(60%), Fujitsu(10%), Nippon Life Insurance(10%), NTT(5%), Mitsui물산(5%), 동일본NTT(5%) 등이 자본금 200억 엔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일본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인 Japan Net Bank(종업원 50여명 규모)를 설립
- Japan Net Bank는 Sumitomo Mitsui의 ATM과 인터넷뱅킹, Nippon Life Insurance의 보험서비스, 경마·경륜 배팅서비스 등의 결합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임으로써 꾸준한 성장세를 시현
 - Japan Net Bank는 대형 은행지주회사인 Sumitomo Mitsui의 금융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약점을 보완했으며, Nippon Life Insurance의 보험서비스를 같은 화면에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원스톱뱅킹 서비스까지 제공
 - 또한 Japan Net Bank는 자금이체와 같은 온라인 결제서비스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ezip@y 서비스를 개발하는 동시에 경마, 경륜 등으로의 배팅과 배당금 정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유인
 - Japan Net Bank는 FY2005~2009 기간 연평균(CAGR) 기준 12.4%의 고성장을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FY2005 325.8억 엔이었던 총자산이 FY2009에는 519.9억 엔으로 증가

- Japan Net Bank는 FY2005에 소폭 적자를 기록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FY2006~2009 중 흑자를 기록했으며, 2006년에는 Yahoo Japan을 투자자로 유치함으로써 온라인쇼핑몰과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
 - FY2005에 Japan Net Bank가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으나 170억 엔에 달하던 경상비용을 FY2006에 150억 엔으로 줄이고(11.8%), 온라인 쇼핑 관련 협력을 강화한다는 전제하에 Yahoo Japan에 지분 10.5%를 매각하면서 FY2006부터는 흑자를 기록
 - 이에 따라 Japan Net Bank의 지분구조는 2011년 2월말 현재 Sumitomo Mitsui Banking Co. 61.1%, Yahoo Japan 10.5%, Nippon Life Insurance 10.4%, Fujitsu 6.9%, Tokyo Electric 3.5% 등으로 바뀜.

V. 시사점

-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데 일부 법적 제약이 있으나 국내기업의 해외 은행업 영위는 가능
- 특정국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는 은행업이 매우 적합하기 때문에 특별한 주력시장(target market)이 있는 국내기업의 경우 동 지역으로의 은행업 진출을 고려할 필요
 - 기업금융 과정에서 인수·합병 대상기업의 발굴, 인지도 제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EU(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제외), 일본, 인도네시아, 홍콩,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 주력시장인 경우에는 은행업 진출이 가능

■ 해외에서의 은행업 영위에 있어서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부문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및 현지 은행과의 합작으로 은행업 노하우를 전수받는 단계를 거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I. 문제의 제기

- 최근 우리금융과 산업은행 등 정부소유 은행의 민영화를 앞두고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장악을 견제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대두
 - 2011년 4월 11일 현재 국내 시중은행 중에서 한국씨티, SC제일, 외환 등 세 곳이 외국자본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우리(20.0%)를 제외한 KB금융(56.5%), 신한(59.1%), 하나(60.9%) 등의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초과한 상황
 - 은행산업은 자금중개자로서 모든 산업에 대한 각종 신용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외국자본이 은행산업을 완전히 장악하면 국가 경제도 종속될 소지
- 사실 산업자본이 은행을 경영하면 기존 네트워크와의 시너지 창출, 수익기반 다각화, 금융서비스 내재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음.
 - 가령 소매 네트워크를 확보한 기업이 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판매, 원스톱뱅킹 등을 통해 기존 네트워크와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음.
 - 또한 기업이 속한 산업의 경기 사이클과 은행업의 경기 사이클이 상이한 경우에는 수익의 변동성을 줄임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갖도록 도와줄 수 있음.
- 그러나 국내 산업자본이 국내은행을 소유·지배할 경우 은행의 기업규율기능 약화, 공정경쟁 저해, 동반 부실화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정성 증대 등의 문제가 있어 은산분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2 국내기업의 해외 은행업 진출에 대한 검토

-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경우 모니터링 대상(기업)이 모니터링 주체(은행)를 지배함에 따라 은행의 기업규율기능이 약화
 - 또한 재벌의 기간산업 장악에 따른 공정경쟁 저해, 산업과 은행의 동반 부실화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증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국내 은행법 제16조에서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소유를 최대 9%로 제한
- 한편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것은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국내법상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해외 은행업 진출에 대해 검토할 필요
- 국내기업이 외국은행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기업규율기능 약화, 공정경쟁 저해, 시스템리스크 등의 문제가 희석되는 상황
 - 국내법에서는 은산분리를 은행법에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은행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은행을 기업이 소유·경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음.
- 그러나 기업이 해외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국가별 은산분리 관련 규정과 과거 기업의 은행 경영 사례들을 조사함으로써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

II. 일반기업의 해외 은행업 영위에 따른 효과

1. 일반기업의 해외 은행업 영위에 따른 긍정적 효과

1) 기존 해외 네트워크 및 기술력과의 시너지 효과

- 해외에서 소매 네트워크를 확보한 기업이 동 지역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판매, 원스톱뱅킹 등을 통해 기존 네트워크와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음.

- 우선 비용 면에서는 기존의 인력, 정보, 설비 등의 공동이용을 통해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판매망 상호이용, 연계판매, 상호구매 등을 통해 수익 시너지도 창출할 수 있음.

* 가령 대형 할인점을 운영하는 기업이 은행업을 영위함으로써 설비와 관련된 비용을 낮출 수 있고 기존 은행들보다 더 낮은 시간까지 뱅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또한 자동차판매망을 보유한 기업이 은행업을 영위할 경우 할부판매 등으로 제품판매와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또한 우수한 경영기법, IT기술력, 기술평가능력 등을 보유한 기업이 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기업이 우수한 경영기법을 은행에 도입할 경우 비용관리, 고객서비스 제고 등에서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은행의 금융기법을 기업에 도입하여 기업 재무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음.

- 은행에서 마케팅, 리스크관리 등에 IT시스템의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IT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산시스템을 선진화할 경우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4 국내기업의 해외 은행업 진출에 대한 검토

- 또한 기술평가능력이 우수한 기업이 이를 은행과 공유하는 경우 중소기업 여신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계획의 성공가능성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여신건전성을 높일 수 있음.

2) 타 부문 해외진출을 위한 첨병의 역할

- 은행의 경우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각종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므로 해외 은행업 진출을 통해 타 부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음.
 - 은행은 도매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각종 여신을 취급하면서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각종 신용정보를 취득하게 되는데, 기업이 해외에서 은행을 운영할 경우 해당시장에 대한 정보를 마케팅과 인수·합병 대상의 물색 등에 이용할 수 있음.
 - 또한 은행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타 부문의 동 지역 진출에 있어서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음.
- 특히 개발도상국의 공기업 매각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므로 기업이 동 국가에 은행형태로 진출할 경우 공기업을 인수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음.
 - 실제로 1989년 대우그룹이 헝가리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참가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헝가리에 대우은행을 설립한 사례가 있음.

3) 수익기반 다각화

- 최근 국내 대기업들은 투자처를 찾지 못하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해외 은행업 진출을 통해 안정적 수익기반을 확보할 수 있음.

- 2009년말 국내 10대 대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무려 43조원에 달한다는 발표가 있었으며, 이는 동 기업 총자산 887조원의 4.8%에 달하는 수치
- 은행업의 경우 리스크관리만 철저히 한다는 전제하에 예대마진을 통해서 안정적 현금흐름을 제공

- 특히 사업의 특성상 이익의 변동성이 커서 현금흐름이 불안정한 국내기업의 경우에는 해외에서의 은행업 영위를 통해 현금흐름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4) 글로벌 금융서비스의 내재화

- 국내 글로벌기업의 경우 해외 각 점포에서의 유동성을 관리하기 위해 높은 비용을 주고 은행의 자금관리서비스(cash management service)를 이용하고 있는데, 해외에 은행을 설치할 경우 동 서비스의 일부를 내재화할 수 있음.
 - 해외 각 점포에서의 통화별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망이 있어야 하는데, 은행 관계사를 확보할 경우 동 수요의 일부를 내부에서 공급할 수 있음.
- 특히 국내은행의 국제화 지연으로 자금관리서비스는 해외 글로벌은행들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해외 은행업 진출로 국부유출 문제도 완화할 수 있음.

2. 일반기업의 해외 은행업 영위에 따른 리스크

1) 전문성의 부재

-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은산분리가 엄격히 시행되었기 때문에 국내기업 중에서 은행의 경영에 전문성을 가진 기업이 없음.
 - 2003년의 카드대란에서 보듯이 일반기업과 은행은 경영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은행을 일반기업처럼 경영할 경우 리스크관리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단, 일부 국내기업은 현재 저축은행을 경영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소규모 은행을 경영한 경험은 있음.
- 특히 해외에서 경쟁하는 것은 국내에서 경쟁하는 것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전문성의 부재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음.
 - 해외에 은행을 설립하는 경우 현지 네트워크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전문성까지 부족할 경우 성공가능성이 낮음.

2) 법적위험(legal risk)의 증가

- 은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금융 감독당국의 사전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주주의 건전성에 관한 정기적 감독도 받아야 함.
 -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현지 감독당국으로부터 은행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은행의 경우 공적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사전 적격성 심사가 매우 엄격함.
 - 또한 은산분리가 완화된 국가에서도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여신 등을 규제하기 때문에 국내기업이 본의 아니게 현지 감독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음.

- 특히 금융선진국일수록 은행의 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사전심사와 사후적 감독이 까다롭기 때문에 국내기업이 동 국가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적위험이 증가할 수 있음.
 - 가령 대주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공시의무가 있으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규정도 엄격함.
 - 공시나 이해상충에 대한 현지규정을 어길 경우 거액의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과 금감원의 감독을 추가로 받게 되며, 이에 따른 법적위험도 있음.
 - 국내 비금융회사가 해외에 은행을 설치한 이후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매분기 역외금융회사의 설립 및 운영 현황 등을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
 - 보고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감원의 징계를 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음.

3) 리스크의 전이현상

-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경영하던 은행이 부실화되는 경우에도 동 리스크가 국내 기업으로 전이될 수 있음.
 - 은행의 경우 대중으로부터 예금을 받기 때문에 은행업 면허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어려워질 경우 대주주가 지원을 약속하는 것이 일반적임.
 - 따라서 국내기업이 경영하는 해외은행이 부실화되는 경우 동 은행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 규모가 클 경우에는 국내기업도 같이 어려워질 수 있음.

8 국내기업의 해외 은행업 진출에 대한 검토

- 특히 은행은 통상 불경기에 부실화되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국제적 신용경색 상황에서 해외은행과 모기업이 동시에 어려워질 수 있음.
 - 은행이 부실화되는 경우는 대출 회수가 안 되거나 유가증권 투자금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발생으로 해외와 국내 경기가 동시에 나빠지면 대주주의 지원약정이 부담으로 작용

Ⅲ. 일반기업의 해외 은행업 영위와 관련된 규정

- 기업이 해외에서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내 관련규정과 현지 관련규정을 동시에 만족시킬 의무가 있음.
 - 해외에서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지 감독당국의 인·허가 절차를 통해 은행업 면허를 취득해야 함.
 - 또한 국내 관련규정도 준수해야 하는데, 비금융회사는 해외투자 시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을 따르고 금융회사(은행 제외)는 업권별 관련규정을 따라야 함.

1. 국내 관련규정

1) 비금융회사의 해외 은행업 영위

- 국내 비금융회사는 해외직접투자¹⁾시 외국환은행에 사전적으로 신고
 - 국내 비금융회사는 해외직접투자 시 외국환거래법 제9-5조(해외직접투자의 신고 등)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사전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음.
 - * 단, 기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 이익유보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하는 경우로서 국내 거주자가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사후보고도 허용
 -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의 외국환은행은 주채권은행이며,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가 아닌 경우 여신최다은행이 외국환은행임.

1) 해외직접투자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해외직접투자)에 따라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용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위해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취득한 주식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10% 미만의 투자를 하면서 임원을 파견하거나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를 1년 이상 계약하거나 기술의 제공·도입이 결부되는 경우 등을 포함

* 여신이 없는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이 외국환은행을 임의로 지정

-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포함),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주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채무불이행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조세체납이 없음을 인정하는 서류, 기타 외국환은행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국내 비금융회사가 해외에서 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도 사전적으로 신고

- 국내 비금융회사가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15조의2(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할 의무

● 국내 비금융회사가 해외에 은행을 설치한 이후에는 외국환은행은 물론 한국은행과 금감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

-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한 국내 비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보고서 등의 제출)에 따라 외화증권취득보고서와 송금·투자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할 의무
-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한 국내 비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15조의2(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에 따라 매분기 역외금융회사의 설립 및 운영 현황 등을 다음 분기 첫째 달 2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의무

* 한편, 한국은행총재는 역외금융회사의 신고(수리)서 사본, 설립 및 운영현황 등을 종합하여 다음분기 둘째 달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

● 한편, 국내기업에 의해 설립된 해외은행은 국내에 지점은 설치할 수 있으나 현지법인 설립이나 국내은행 인수는 불가함.

- 은행법 제16조에 따라 비금융주력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 주식의 9%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어 현지법인 설립이나 국내은행 인수·합병은 불가하지만, 지점에 대한 규정은 없음.

2) 비은행 금융회사의 해외 은행업 영위

- 국내기업의 경우 금융계열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므로 금융계열사의 해외 은행업 영위와 관련된 규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국내 금융투자업자는 해외로 진출할 때 금융위원회에 사후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보고사항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의무
-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업이나 집합투자업 외의 사업을 외국에서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사전적 승인을 받을 의무가 있으므로 해외에서 은행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 승인이 필요
 - 국내 보험회사가 보험업이나 집합투자업 외의 사업을 외국에서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제115조(자회사의 소유)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자회사의 소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를 신규로 편입할 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해외에서 현지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승인이 필요

- 국내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새로이 편입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6조(자회사 등의 편입승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동법 제17조(자회사 등의 편입 승인요건)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 상태, 주식교환비율의 적절성(주식교환으로 편입하는 경우) 등을 평가받음.

2. 진출대상국의 관련규정

-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현지 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은산분리 원칙이 지켜지는 국가에서는 인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해외 각국의 은산분리 관련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국내 기업이 금융 자회사를 통해 해외 은행업을 인수하려고 하더라도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결국은 은산분리 원칙의 적용 여부가 중요

1) 미국

- 미국의 경우 1956년 이전까지 일반 기업의 은행업 영위가 가능했으며, 이 때 비금융주력자에 의해 설립된 일부 은행들이 현재 주요 대형은행들의 전신이었음.
- 1933년까지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소유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었으며, 1933년 은행법(Banking Act of 1933) 제정을 통해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경우 연방은행으로부터 의결권 행사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규정

- 1799년 뉴욕의 생수회사인 Manhattan Company가 Bank of the Manhattan Company를 설립하였는데, 1808년 생수사업을 정리하고 은행업에 집중한 Bank of the Manhattan Company가 1955년 JPMorgan Chase의 전신인 Chase Manhattan과 합병
 - 1928년 Giannini는 통신업, 전기업, 은행업,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 지주회사 Transamerica Corporation을 설립했는데, 1953년 반독과점법(Clayton Antitrust Act)에 따라 Transamerica에서 오늘날의 Bank of America가 분사됨.
 - 또한 1956년 은행지주회사법의 통과로 인해 은행업과 비금융업의 동시 영위가 불가해지자 Transamerica에 남아있던 은행부문을 분리하여 Firstamerica Corporation을 설립했는데, 이것이 훗날 Wells Fargo와 합병된 First Interstate Bancorp로 발전
- 1956년 은행지주회사법의 제정으로 인해 일반 기업이 은행업을 영위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면서 은산분리 원칙이 생김.
- 1956년에 제정된 은행지주회사법에서는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를 은행지주회사로 정의하였으며, 동 회사는 은행업 및 관련 사업만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배를 금지
 - *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제12장 1841절에서는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보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 또는 지배하는 경우,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FRB가 결정하는 경우 동 회사를 은행지주회사로 정의
 - 은행지주회사는 은행이 아닌 회사 주식의 신규 취득이 금지되고 설립 2년 후에는 은행(은행지주회사) 이외의 회사 지분 소유도 금지되며 은행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이외의 업무 영위가 금지(제12장 1843절)

● 이후 1987년 경쟁적평등은행법(Competitive Equality Banking Act)의 제정으로 일반 기업이 산업대출회사(Industrial Loan Company, 이하 'ILC')를 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은산분리 원칙이 완화

- ILC는 州 인가(state-chartered)를 받은 연방예금보험기구(FDIC) 부보기관으로서 정기예금, 저축성예금(CD 포함), 상업대출, 모기지, 신용카드, 소비자대출 등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광범위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음.
- ILC는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하지만 은행지주법상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비금융주력자에 의한 소유가 가능하며, 2006년 현재 Utah, California, Colorado, Minnesota, Indiana, Hawaii, Nevada 등 7개 주에서 약 60여개의 ILC를 인가한 것으로 조사
- 2006년 현재 ILC 전체의 자산 총계는 1,550억 달러(예금 1,110억 달러)에 달하며, ILC를 설립한 대표적 비금융회사로는 General Electric(전기회사), General Motors(자동차회사), Target(대형할인점), Nordstrom(백화점), Harley-Davidson(오토바이회사), First Data(지급결제회사), United Health Group(의료서비스회사), BMW(자동차회사) 등이 있음.

● 그러나 2006년 미국 유통업체인 Walmart의 ILC 설립신청을 계기로 ILC에도 은산분리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2010년 제정된 금융개혁법에 따라 일반 기업의 ILC에 대한 신규 인가가 금지되면서 미국의 은산분리 원칙이 강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금융산업을 종합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제정된 금융개혁법(『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9』) 제603조에서는 비금융회사가 신청하는 ILC에 대한 정부기관의 인가를 금지

- 따라서 국내기업이 미국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 한편 기존에 설립된 ILC들은 산업자본에 의해 계속 경영되고 있으나 이들을 국내기업이 인수하는 경우에도 신규 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수·합병을 통한 은행업 인수가 불가

2) 아시아

가. 일본

- 일본에서는 역사적으로 은행이 재벌(zaibatsu)의 주력산업이었으나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미군정의 재벌해체를 계기로 은산이 분리됨.

- 19세기 형성된 일본의 재벌은 은행과 일반 기업을 동시에 지배하면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을 계열사에 지원
- 가령 일본의 4대 재벌인 Mitsubishi, Mitsui, Sumitomo, Yasuda는 지주회사 밑에 은행을 주력 자회사로 두었으며, 그 자본력을 바탕으로 군수산업, 항공업, 무역업, 철강업, 자동차산업, 섬유산업, 건설업 등을 동시에 영위

* 일련의 인수·합병 결과, Mitsubishi Bank는 Mitsubishi UFJ로, Mitsui Bank와 Sumitomo Bank는 Sumitomo Mitsui Banking Co.로, Yasuda Bank는 Mizuho Financial Group으로 진화

-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군정은 전쟁포로와 식민지 노동자들을 이용하여 무기를 생산했던 일본 재벌들을 해체하기로 결정하고 1946년 두 차례에 걸친 재벌 해체 계획을 추진
- 이후 은행법에서는 은행이 일반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고 일반 기업은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금액을 은행에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이에 따라 은행을 축으로 하는 기존의 재벌체계가 붕괴

- * 가령 Misui 그룹의 Toshiba, Toyota, Suntory 등은 그룹에서 분리되어 독립법인이 되었으며, Mitsubishi UFJ와 Mitsubishi Motors 등 과거 Mitsubishi 계열사들은 상호출자 관계가 대부분 정리된 채 동일한 상호만 사용하고 있음.
 - ** 일본 10대 은행 중 일반 기업 지분이 있는 경우는 2010년 3월말 기준 Toyota 자동차의 Mitsubishi UFJ 지분 1.05% 보유와 Kubota 중공업의 Saitama Trust & Banking Co. 지분 1.31% 보유밖에 없음.
- 법적으로는 은행의 기업소유가 금지된 반면, 기업의 은행소유는 금지되지 않아 산업자본의 은행소유가 가능했으나 재벌해체 이후 1999년까지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 설립이 없었음.
- 이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에 대한 일본 감독당국의 부정적 인식, 과거 재벌 계열사들 간의 협조에 따른 재벌계 은행설립 필요성의 부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
 - * 재벌해체로 계열은행의 지분관계는 청산되었으나 Mitsubishi, Mitsui, Sumitomo 등 대형 그룹의 회사들과 과거 계열사였던 계열은행 간의 거래행태는 지속되고 있음.
- 2000년 인터넷 전문은행과 ATM 전문은행 등 특화은행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본 감독당국은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업 영위를 위한 요건을 마련했으며, 이를 계기로 몇몇 일반 기업이 특화은행을 설립
- 일본 금융감독청은 2000년 6월 『타 업종에 의한 은행업 진입 등 새로운 형태의 은행업에 대한 인가 및 감독지침』을 수립
 - 동 지침에서는 은행과 본사의 독립성 확보, 본사로의 사업리스크 차단, 고객 정보 보호, 자산구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 등을 의무화하는 대신 일반 기업의 특화은행 설립을 허용
 - 이에 따라 2001년 전자회사인 Sony가 인터넷 전문은행인 Sony Bank(지분을 80%)를 설립하였으며, 물류회사인 Seven Eleven Japan와 Ito-Yokado 등을 소유한 Seven & I Holdings(지분을 88%)가 ATM 전문은행인 Seven Bank를 설립

- 따라서 국내기업이 일본에 특화은행을 설립·운영하는 데에는 법적 제약이 없는 것으로 조사
 - 단, 일본 은행법에 따라 모기업의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금액을 은행에 투자할 수 없음.

나. 중국

- 중국에서 중국기업이 중국 은행을 소유하는 데에는 법적 제약이 없으나 외자은행관리조례에 따라 외국기업은 중국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음.
 - 중국 은행법 제12조에 따라 상업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건전성, 전문경영인, 정관, 보안시스템 등에 대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산업자본의 소유에 대한 규제는 없음.
 - 그러나 중국 외자은행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외국독자은행을 설립하려는 주주는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그 중에서 단일주주나 대주주는 반드시 상업은행이어야 함.
 - 또한 외자은행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외합자은행을 설립하려는 주주도 반드시 상업은행이어야 하며, 중국 은행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투자는 단일 외국인 20%, 전체 외국인 25%로 제한됨.
 - 단, 국내기업이 중국은행의 설립에 대주주가 아닌 주요 주주로서 참가하는 경우에는 외자은행관리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음.
- 한편 중국 은행은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와 기업에 투자할 수 없음.
 - 중국 은행법 제43조에 따라 상업은행은 중국 내에서 신탁투자와 증권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비업무용 부동산,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 일반기업 등에 투자할 수 없음.

다. 인도

- 인도의 경우 은산분리 규정은 없으나 대주주와 외국인에 대한 지분한도가 있음.
 - 인도 은행법 제22조에 따라 상업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예금자 보호, 자본금, 수익전망, 전문경영인 등에 대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산업자본의 소유에 대한 규제는 없음.
 - 인도 은행법 제31조(Regulation of paid-up capital, subscribed capital and authorized capital and voting rights of shareholders) 2항에 따라 은행의 어떤 주주도 전체 투표권의 45% 이상을 행사할 수 없음.
 - 인도의 경우 외국인은 현지은행 지분을 5%까지만 보유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에 의한 현지은행 설립 및 인수는 불가
- 또한 인도 은행은 자회사가 아닌 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자회사의 경우 은행업과 직결된 업종으로서 인도 은행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감독당국의 인정을 받아야 설립
 - 인도 은행법 제19조 1항에 따라 은행의 자회사는 인도에서 은행업을 영위하거나, 해외에서 은행업을 영위하거나, 인도 은행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회사인 것으로 감독당국이 인정하는 은행관련 업종이어야 함.
 - 인도은행법 제19조 2항에 따라 은행은 업종과 관련 없이 자회사가 아닌 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할 수 없음.

라.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에서는 일반기업의 은행 소유가 허용되지만, 국내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인과 합자할 필요

- 인도네시아 은행법 22조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상업은행은 인도네시아 시민 또는 인도네시아 시민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설립해야 하며,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의 경우 인도네시아인이나 인도네시아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서만 은행을 소유·경영할 수 있음.
- 최근 하나은행의 인도네시아 PT Bank 인수도 현지 규정으로 인하여 100%가 아닌 61%만 인수했으며, 나머지는 IFC 19%, 인도네시아인 20%로 구성

마. 베트남

- 베트남에는 은산분리 규정이 없어 일반기업의 은행소유가 가능하지만, 외국인 차별규정으로 인해 국내기업이 베트남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
 - 베트남 은행에 대한 투자지분은 단일 외국인이 10%, 전체 외국인이 30%이며, 총리의 특별허가를 받는 경우 단일 외국인이 2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음.
 - 단, 현지은행과 합작하는 경우 50% 지분을 보유할 수 있으며, 최근 한시법에 의해 신한은행을 포함한 5개의 외국은행이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설립
 - 베트남 은행법시행령에 따라 지점, 합작, 현지법인 등의 방식으로 베트남에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국자본은 은행으로 제한됨.
 - 단, 국내기업이 베트남에서의 은행설립에 대주주가 아닌 주요 주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은행법시행령 규제를 받지 않음.

바. 홍콩

- 홍콩에는 은산분리 및 외국인 차별규정이 없어 국내기업의 현지은행 소유가 가능하나 현지 감독당국의 적부심사를 통과할 필요

- 홍콩 은행법 제70조에 따라 홍콩 은행의 소유주에 대한 사전적 제한은 없으나 홍콩 감독당국의 적부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음.
- 한편 홍콩의 은행은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지분을 25% 이상 보유할 수 없으므로 국내기업이 홍콩 은행을 보유하는 경우 동 은행이 일반기업을 자회사로 둘 수는 없음.
 - 홍콩 은행법 제87조에 따라 홍콩의 은행은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의 지분을 25% 이상 보유할 수 없음.

사. 싱가포르

- 싱가포르에는 은산분리 규정이 없어 일반기업의 은행소유가 가능하며, 외국인에 대한 지분제한도 없어 국내기업이 싱가포르에 은행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
 - 싱가포르 은행법 제15조에 따라 특정인이나 법인이 싱가포르은행 지분의 5%, 12%, 20% 이상 초과할 때마다 감독당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만,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지하지는 않음.
 - 싱가포르는 1999년부터 외국인의 은행소유에 대한 지분제한을 전면 폐지했으므로 국내기업이 싱가포르 은행을 인수·합병하거나 싱가포르에 은행을 신규로 설립하는 데 법적 제약은 없음.
- 한편 싱가포르의 은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금융업을 영위하거나 비금융업 자회사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국내기업이 싱가포르에 은행을 설립하는 경우 비금융 자회사를 설치할 수 없음.
 - 싱가포르 은행법 제30조 및 32조에 따라 싱가포르의 은행은 싱가포르 내외를 막론하고 비금융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그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두거나 합자할 수 없음.

아. 카자흐스탄

- 카자흐스탄에는 은산분리 규정이 없어 일반기업의 은행소유가 가능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지분제한이 있어 국내기업은 50% 이상을 소유할 수 없음.
 - 카자흐스탄 은행법 제17조에 따라 일반기업도 은행을 소유할 수 있으나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경우 지분을 50% 이상 소유할 수 없음.
- 한편 카자흐스탄에서는 은행이 일반기업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으므로 국내기업이 카자흐스탄에 은행을 설치하는 경우 동 은행은 일반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없음.
 - 카자흐스탄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카자흐스탄 은행은 일반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음.

자. 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은산분리 규정이 없으나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본국에서 예금수취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야만 우즈베키스탄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음.
 - 우즈베키스탄 은행법 제7조에 따라 개인, 금융자본, 산업자본, 외국인의 우즈베키스탄 은행 소유가 허용되는데, 외국의 정부나 정부 관련 기금은 우즈베키스탄 은행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음.
 - 우즈베키스탄 은행법 제15조에 따라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국에서 예금수취업무를 수행해야 함.
 - 따라서 국내기업 중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 회사는 저축은행을 소유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제한됨.

- 한편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은행의 비금융회사 지분소유에 대한 규제가 없으므로 우즈베키스탄 은행이 일반기업을 소유하는 데에는 법적 제약이 없음.

3) EU국가

- EU국가의 금융규제에는 은행-증권분리를 기본으로 하는 앵글로-색슨형(영국형)과 유니버설뱅크를 인정하는 대륙형(독일형)이 존재
 - 이들 두 가지 상충되는 규제모형은 EU경제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던바, EU는 은행조정지침(2nd Banking Coordination Directive 1989)과 투자서비스지침(Investment Service Directive 1993)을 통해 상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음.
 - EU회원국들은 기본적으로 이들 지침을 따라야 하지만 동 지침의 기본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보다 엄격한 규제를 행할 수 있어 회원국간 규제상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함.
- 우선 은행조정지침에 의하면, 적격투자(qualifying investment) 또는 적격보유(qualifying holding)를 위해서는 주주의 자격에 대해 승인을 필요로 하지만,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투자·보유한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약이 없음.
 - 여기서 적격투자 또는 적격보유란 투자기업 자본금이나 의결권의 10% 이상 또는 기업경영상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의미
 - 다만, 은행주식에 대한 직·간접적 적격 투자·보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의도하는 지분규모를 감독당국에 통지해야 하며, 의결권 또는 지분비중이 20%, 33%, 50%를 초과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에 신고해야 함(Article 11.1).

- 또한 감독당국은 은행이 건전하고 신중한(sound and prudent) 경영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만약 해당 투자기업의 적절성(suitability)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분의 소유 및 증액을 반대할 수 있음.
 - 이때 감독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분을 취득한 자가 있다면 해당 지분의 의결권행사 중지, 행사된 의결권의 무효화 및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따라서 EU국가들 중에서 독일과 영국 등 24개 국가에서는 일반기업의 은행 소유가 가능한데,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등 3개국은 예외적으로 일반기업의 은행소유를 제한
- World Bank에서 각국의 은행관련 규제상황에 대해 조사한 『Banking Regulation Survey(2007)』에 따르면, 27개의 EU국가 중에서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라트비아, 말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아일랜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 24개국에서는 일반기업이 은행지분을 100%까지 인수하여 경영할 수 있음.
 - 반면 동 자료에 의하면, 이탈리아와 룩셈부르크에서는 일반기업의 은행지분 보유에 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리투아니아에서는 일반기업의 은행지분 보유 자체를 금지하고 있음.

가. 프랑스

- 유럽지침서의 규정에 따라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에 대한 적격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함.

- 예컨대 1996년 프랑스 금융현대화법(FMA) 12장에 따르면, 투자기업은 은행 의결권부 주식의 5% 초과 10% 미만을 취득할 경우 투자기업신용평가위원회 (CECEI; Comité des Établissements de Crédit et des Entreprises d'investissement)에 사전 신고해야 함.
- 또한 의결권부 주식의 10%, 20% 또는 33%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경영권을 확보 또는 상실하는 경우에는 동 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동 위원회는 투자기업을 승인하기 전에 직·간접적으로 적격 보유하게 되는 개별 주주와 보유금액을 확인하고 계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야 함.

나. 독일

- 독일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유럽지침서의 규정을 따르고 있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투자·보유한도에 대한 별도의 제약은 없으나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20%, 33% 또는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방은행감독청과 연방은행 보고 및 승인이 필요함.
- 연방은행감독청은 보고에 관한 사항을 연방증권감독원(FSOST)에 송부해야 하며, 보고된 시점에서 3개월 내에 지분인수를 금지할 수 있음.
- 한편 은행의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투자 역시 유럽지침서의 규정을 따르지만, 은행의 은행, 비은행금융기관 또는 일반회사에 대한 투자한도는 은행 자기 자본의 15%로 제한됨.

다. 이탈리아

- 이탈리아의 경우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에 대한 투자를 유럽지침서 규정보다 엄격하게 규제
 - 1993년 은행법(Testo Unico Bancario)의 제3장은 은행과 산업의 분리라는 기본원칙 하에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산업에 진입하는 데 매우 엄격한 제약을 두고 있음.
 - 예컨대 은행 및 금융(banking and finance) 이외의 분야에서 주요 영업활동을 하는 자는 은행 의결권부 주식의 15%를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이 금지됨(Article 19.6).
 - 또한 동 주식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지배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앙은행(The Bank of Italy)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Article 19.1).
 - 이렇듯 이탈리아에서 은행규제의 기본원리는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이 거부되거나 사후적으로 취소될 수 있음(Article 19.5).

3. 시사점

-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에서는 은산분리가 엄격히 적용되지만 국내기업이 해외 은행을 인수하거나 해외에서 은행을 설립하는 것은 가능
 - 단,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순간 한국은행과 금감원의 감독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규제비용 증가가 예상됨.
-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국가들은 은산분리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동 지역으로의 진출은 불가하며,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규제 때문에 현지은행의 소유가 불가

- 대부분의 EU국가에서는 적격성 심사만 통과하면 국내기업이 은행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 인도네시아, 홍콩,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은행업 영위가 가능
 - EU에서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라트비아, 말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아일랜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 24개국으로의 진출을 통한 은행업 진출이 가능하며, 일본에서는 특화은행, 인도네시아에서는 합작은행을 통한 은행업 영위가 가능
 - 단, 카자흐스탄에서는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으며, 우즈베키스탄에서 은행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저축은행 등의 소유를 통해 예금수취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함.
 - 또한 홍콩에서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현지 감독당국의 적부심사(fit and proper test)를 통과해야 함.

IV. 일반기업의 은행업 영위 사례

- 최근 일반기업이 대형은행을 소유·경영하는 사례는 없으나 할부금융 전문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ATM 전문은행, 산업대출회사 등 특정 은행업에 특화하는 중소형은행 중에서는 일반기업이 소유한 사례가 종종 있음.

- 세계 100대 은행 중에서 이탈리아의 Intesa Sanpaolo(중공업회사 Carlo Tassara 2.5%), 일본의 Mitsubishi UJF(자동차회사 Toyota Motor 1.05%) 등이 일반기업을 주요 주주로 보유하고 있으나 지배주주나 대주주라고 하기에는 지분율이 너무 작음.

* 통상 동일인의 은행 지분율이 25% 이상이 되어야 지배주주라고 해석하며, 10~25%는 은행 경영에 영향력을 미치는 대주주급 주요 주주로 보고 5% 미만인 경우 전혀 지배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

1. 국내기업 사례

1) Daewoo Bank(현, KDB Hungary)

- 1989년 글로벌화 전략의 일환으로 동유럽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대우그룹은 산하 자동차, 조선, 증권 등과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헝가리에 합작은행인 Daewoo-MHB Bank를 설립
-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계기로 동유럽시장이 개방되면서 대우그룹은 동 지역으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자동차와 선박의 판매는 물론 증권투자에 있어서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헝가리에 은행을 설립하기로 결정

- 이에 대우증권은 헝가리신용은행(Hungarian Credit Bank)과 각각 25만 달러씩 출자(지분 50:50)하여 Daewoo-MHB Bank라는 합작은행을 설립
- Daewoo-MHB Bank는 1995년 대우그룹의 헝가리신용은행 지분 전량인수에 따라 Daewoo Bank로 개명했으며, Daewoo Bank는 대우자동차와의 연계영업을 통해 높은 시너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 Daewoo-MHB Bank는 1993년 증권사를 설립하고 1994년 리스사를 설립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원스톱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대우자동차 및 대우조선과의 연계영업을 강화
 - * 대우은행이 대우자동차의 할부판매를 지원하면서 대우자동차가 첫 달부터 8,000대 이상(당시 현대자동차는 헝가리에서 한 달에 500여대를 판매)의 매출을 올리게 되었고, 이에 따라 대우은행도 할부고객을 다량 확보
 - 1995년 대우그룹이 헝가리신용은행 지분을 전액 인수하면서 상호가 Daewoo Bank로 변경되었으며, 자회사로 컨설팅사(Daewoo Hungary Financial Consulting)도 설립
- Daewoo Bank는 신상품 개발 등을 통한 적극적 마케팅으로 우수한 경영실적을 거두었으나 1999년 대우그룹의 부도를 계기로 산업은행에 인수됨.
 - 2000년말 기준 Daewoo Bank의 총자산은 1억 6천만 달러까지 증가한 상태였으며,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9.7%에 달하는 우량은행으로서 Daewoo Leasing Hungary, Daewoo Service, Daewoo Financial Consulting, Daewoo Leasing Czech 등 4개의 자회사를 보유
 - * Daewoo Bank는 중도해지 시에도 금리를 상당부분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인 '넘버원 예금'과 수시 입출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당좌예금 상품인 'VIP예금' 등을 개발함으로써 고성장을 위한 소매예금을 확충했으며, 자산운용에 있어서는 중소기업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

- 1999년 대우그룹이 부도난 이후 대우증권은 계열분리되었으며, 2000년 산업은행이 대우증권의 최대주주로 등극
- 2002년 산업은행은 대우증권의 자회사인 Daewoo Bank를 2,920만 달러에 매입(지분 100%)했으며, 이후 Daewoo Bank는 KDB Hungary로 개명

2) LG Petro Bank

- 1995년 동유럽시장 진출기반 마련에 주력하던 LG는 현지 자금조달 및 금융업 확대를 위하여 폴란드에서 은행을 인수하기로 결정
 - 동유럽과 서유럽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동유럽 최대시장인 폴란드에 은행을 설치함으로써 가전제품 등의 동유럽 진출과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자 하였으며, 현지 자금조달 및 브랜드 인지도의 상승 등을 기대
 - 또한 당시 LG는 LG카드, LG증권, LG종금 등 금융계열사가 많았기 때문에 해외은행 인수를 통해 그룹의 금융업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Petro Bank 인수의 주요 동인이었음.
 - * LG가 해외에서 은행업을 영위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대우 헝가리은행의 성공사례 및 GE Capital의 헝가리 Budapest Bank 인수(1995년)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조사
- 당시 Petro Bank는 우찌(Lodz)시에 위치한 소형 국유은행이었으며,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따라 인수·합병 매물로 등장
 - Petro Bank는 폴란드에서 두 번째로 큰 우찌에 위치한 은행으로서 인수 당시 자본금 2,000만 달러(당시 자본금 기준 폴란드 21위), 지점 7개 등을 보유한 소형은행
 - Petro Bank의 대주주는 국영 석유회사였는데, 폴란드 정부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국영은행들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Petro Bank도 인수·합병 시장에 등장

- 1996년 LG는 증자를 통해 Petro Bank를 인수했으며, 이를 위해 LG증권과 LG종금이 총 5,000만 달러를 출자
 - 사실 LG는 폴란드의 상업은행 중 상위 20개사를 검토했으나 낮은 가격과 우수한 건전성(무수익여신비율 3%) 등을 고려하여 Petro Bank를 선택
 - LG는 기존의 주주들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 Petro Bank의 기존 주식 수보다 한 주를 더 신규로 발행하여 전량을 인수했으며, 이를 통해 50%+1주를 가진 대주주가 됨.
 - 인수가액은 기존 자본금(2,000만 달러)에 150%의 프리미엄을 붙인 5,000만 달러였으며, LG증권(32.1%)과 LG종금(17.9%)이 출자
 - * LG의 인수시도 이전에 Petro Bank의 주가는 4~5 즐로티 수준이었으나 인수경합 단계에는 6~10 즐로티로 상승했으며, 결국 LG는 주당 12 즐로티의 가격으로 인수
- LG Petro Bank는 신상품 개발, 전산시스템 도입, 전사적 마케팅 등을 통해 우찌 지역의 소형은행에서 전국에서 영업하는 중형은행으로 성장했으며, 경영 실적도 우수
 - LG Petro Bank는 당좌예금 잔고의 크기에 따라 차등금리를 지급하는 '프로 그레시브 당좌예금', 예금액의 0.5%를 환경기금으로 기부하는 '환경예금', 1개월마다 만기가 갱신되는 '템포플러스' 등의 예금상품을 연달아 개발함으로써 수신을 연평균 62%씩 증가시킴.
 - 또한 'LG Habitat'라는 토지취득, 주택신축, 아파트구입 등을 위한 모기지 상품을 개발하고 현지의 공기업들에 대한 적극적 대출 마케팅을 통해 여신도 연평균 49% 증가하면서 부실대출비율은 2% 미만으로 유지
 - LG가 인수할 당시 Petro Bank에는 전산시스템이 없어 경영현황도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전산시스템은 물론 인터넷뱅킹과 이트레이딩까지 구축

- 1997년에는 본사를 우찌에서 수도인 바르샤바로 옮겼으며, 마케팅을 위해 바르샤바 상류사회의 인사들을 기용하고 기존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경쟁력도 제고

● 그러나 대우그룹 도산을 계기로 DJ정부가 재벌 간의 빅딜정책을 추진하면서 LG Petro Bank는 Nordea Bank에 헐값으로 매각

- 대우그룹의 도산을 계기로 DJ정부는 재벌들에게 주력산업으로의 집중을 요구했으며, 이러한 빅딜정책의 일환으로 LG는 LG Petro Bank를 포함한 금융산업을 포기
- 이에 따라 LG Petro Bank는 급매물로 시장에 나왔고 우여곡절 끝에 2002년 Nordea Bank에게 주당 21 즐로티의 가격으로 매각

* 당시 LG Petro Bank의 공정가는 주당 30~35 즐로티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였으나 급매물의 성격상 제 가격을 받지 못한 것으로 평가

3) Hanwha Bank Hung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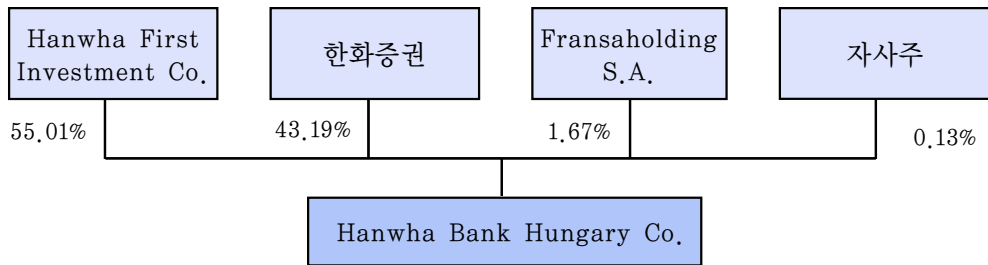
● 1993년부터 그리스에서 아테네은행을 경영하던 한화는 1996년 동유럽시장 진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헝가리에 은행을 설립

- 한화는 1993년 그리스에 22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던 Bank of Athens(자본금 1천만 달러)를 공개입찰 방식으로 인수하여 운영
- 1996년에는 동유럽 진출을 위해 Bank of Athens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소재한 Banque Indosuez Hungary(프랑스 Indosuez S.A.의 자회사)를 5백만 달러에 인수하였으며, 이후 동 은행은 Hanwha Bank Hungary로 개명
- 당시 Hanwha Bank Hungary는 증권사를 자회사로 둔 총자산 3천 2백만 달러 규모의 소형은행이었으며, 지점은 본점 1개밖에 없었음.

● 1998년 IMF 사태로 유동성이 어려워진 한화는 유럽의 모든 은행들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Bank of Athens만 매각에 성공하고 Hanwha Bank Hungary는 매각에 실패

- 그리스의 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인수한 Bank of Athens는 1998년 EFG Eurobank Ergasis에 지분 58%를 매각함으로써 정리했으나 EFG Eurobank Ergasis 측에서 Hanwha Bank Hungary를 원하지 않았음.
- 이에 한화는 Bank of Athens를 보유하고 있던 Hanwha Bank Hungary 지분을 한화기술금융의 네덜란드 자회사인 Hanwha First Investment(55.01%)와 한화증권(43.19%)으로 양도

〈그림 1〉 한화 헝가리은행 소유구조



주 : 2011년 2월말기준

자료 : 헝가리 한화은행 홈페이지(www.hanwhabank.hu)

● Hanwha Bank Hungary는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유럽 경제사정 악화로 대손비용이 급증하면서 손실을 기록하고 있음.

- 1996년 3천 2백만 달러에 불과하던 Hanwha Bank Hungary의 총자산은 중소기업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2005년말 6천만 달러, 2010년말 6천 6백만 달러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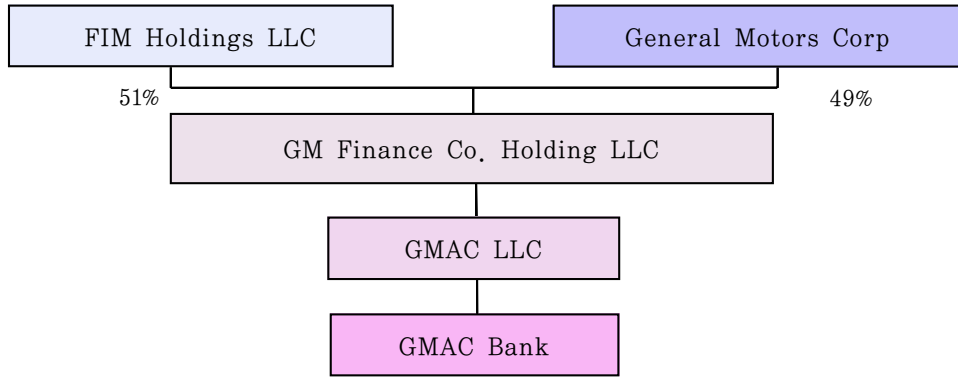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손비용이 급증하면서 2003년부터 2009까지
흑자를 기록하던 Hanwha Bank Hungary는 2010년 약 25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

2. 해외기업 사례

1) GMAC Bank(현, Ally Bank)

- 1919년 미국의 자동차회사 GM(General Motors)은 자동차 관련 금융수요의
충족과 자동차 판매량의 확대를 위해 GMAC(General Motors Acceptance
Corporation)를 설립
 - 1919년 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된 GMAC는 자동차 딜러들의 파이낸싱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판매망을 확대하고 소비자들에게 할부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자동차판매에 기여
 - 이후 GMAC는 Motors Insurance Corporation이라는 보험 자회사를 설립
함으로써 자동차보험 판매에 나섰으며, 1985년에는 GMAC Mortgage라는
모기지회사를 설립하여 주택담보대출도 취급하기 시작
- 2000년 GMAC는 인터넷전문은행인 GMAC Bank를 설립하였으며, 2006년에
는 GM이 GMAC 지분의 51%를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최대주주가 바뀜.
 - 2000년 GMAC는 소매예금 수취를 통한 자금조달 비용의 하락과 기존 주택
담보대출 비즈니스의 확대를 위해 GMAC의 완전자회사 형태로 인터넷전문
은행인 GMAC Bank를 설립
 - 한편 GM은 2006년 은산분리 논쟁과 경영난 등으로 인해 GMAC 지분 51%를
사모펀드 Cerberus Capital Management의 자회사인 FIM 지주회사에 매각

〈그림 2〉 GMAC Bank 소유구조 및 모회사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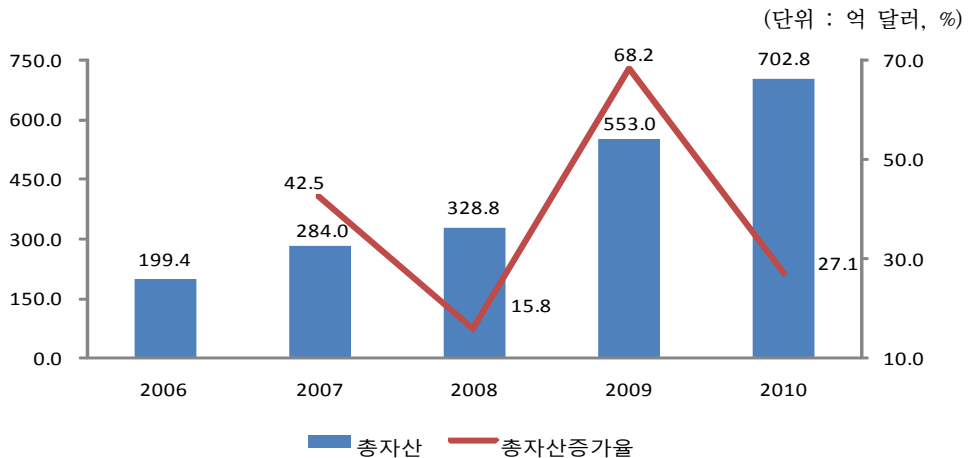


주 : 2006년말 기준

자료 : Bankscope

- GMAC Bank는 GM의 계열사로서 모회사의 높은 인지도와 고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높은 성장세를 시현

〈그림 3〉 GMAC Bank의 자산 및 증가율¹⁾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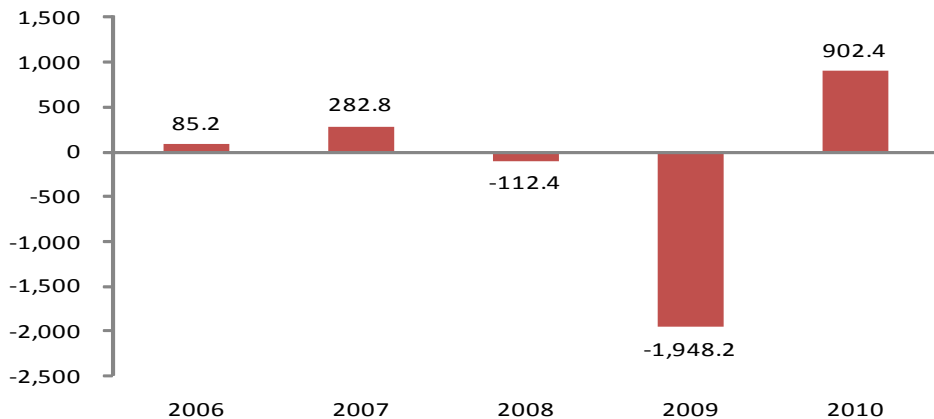


주 : 1) 전년동기 대비 기준

자료 : FDIC

- GMAC Bank는 ILC로서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상품을 취급했으며, 2006~2010년 중 연평균(CAGR) 기준 37.02%의 고성장을 기록(2006년 199.4억 달러였던 총자산이 2010년에는 702.8억 달러로 증가)
 - 이는 GMAC Bank가 모회사 GMAC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소매와 도매를 통해 저리의 자금을 대량으로 조달할 수 있는데다 주택담보대출 영업기반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임.
- 그러나 서브프라임 사태를 계기로 GMAC Bank는 대손비용 급증으로 대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으며, 2010년에서야 흑자로 전환
-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GMAC Bank의 부실채권비율도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대손비용 때문에 2008년과 2009년 대규모의 적자를 기록
 - 그러나 미국 경기가 회복기에 들어선 2010년에는 그 동안의 부실채권 구조 조정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서 GMAC Bank도 흑자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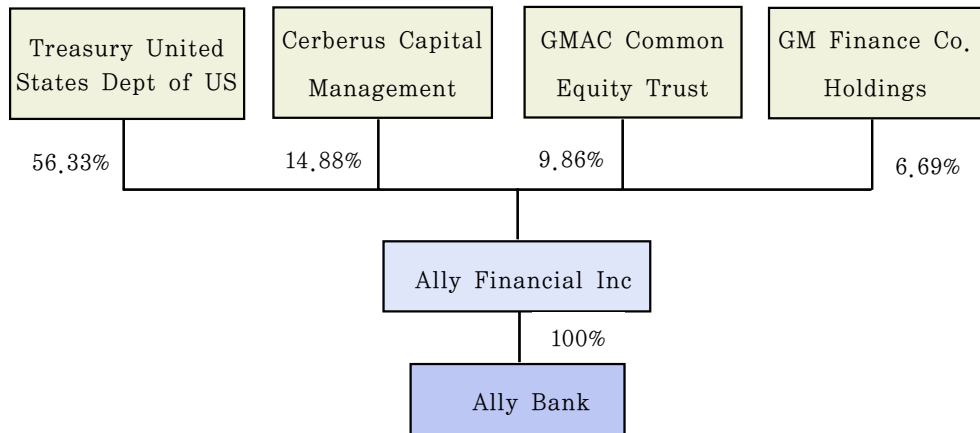
〈그림 4〉 GMAC Bank의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FDIC

- 2008년 대규모 적자로 GMAC Bank의 자본이 취약해지면서 미국정부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재무성이 GMAC의 최대주주로 등극하면서 이름이 Ally Bank로 바뀜.
 - 2008년 12월 미국 재무성은 GMAC를 구제하기 위해 50억 달러 규모의 TARP 자금을 투입했으며, 2009년 5월 75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하면서 미국 재무성이 GMAC의 최대주주로 등극
 - 2009년 5월 GMAC Bank는 브랜드이미지 개선을 위해 Ally Bank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2010년 5월에는 GMAC도 이름을 Ally Financial로 바꿈.

〈그림 5〉 Ally Bank의 소유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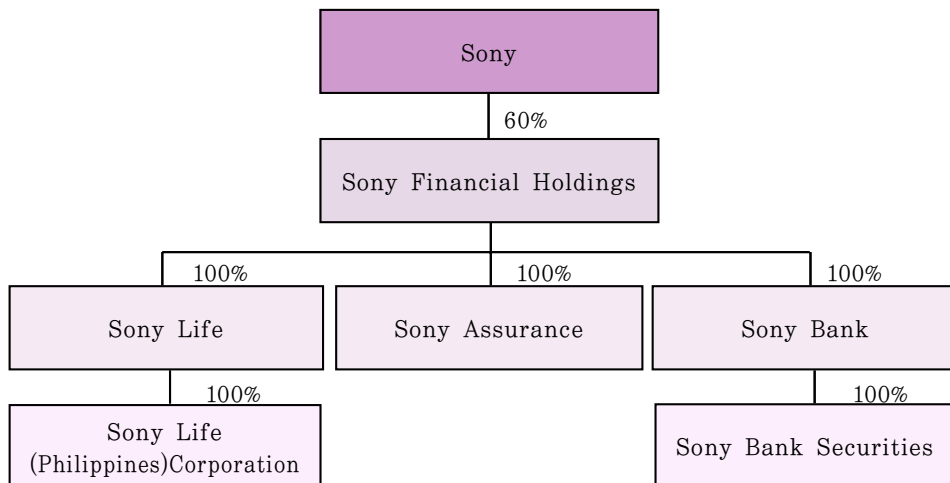
주 : 2011년 2월 기준
 자료 : Bankscope

2) Sony Bank

- 2001년 일본의 글로벌기업 Sony는 Sumitomo Mitsui, JP Morgan Chase와 함께 Sony Bank를 설립

- 2001년 Sony는 경험 및 네트워크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Sumitomo Mitsui Banking Co., JP Morgan Chase와 합작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인 Sony Bank를 설립하였고, 출자지분은 Sony 80%, Sumitomo Mitsui Banking Co. 16%, JP Morgan Chase 4%로 이루어짐.
 - Sony Bank의 2대주주인 Sumitomo Mitsui Banking Co.는 Sony Bank의 고객들에게 자사의 광범한 ATM망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3대주주인 JP Morgan Chase의 경우 인터넷뱅킹 및 자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공
- 2004년 Sony Bank는 Sony의 중간지주회사인 Sony Financial Holdings에 편입되었으며, 2008년 Sony Bank의 모든 주식을 Sony Financial Holdings가 인수하면서 완전자회사가 되었음.

〈그림 6〉 Sony Bank의 소유구조 및 모회사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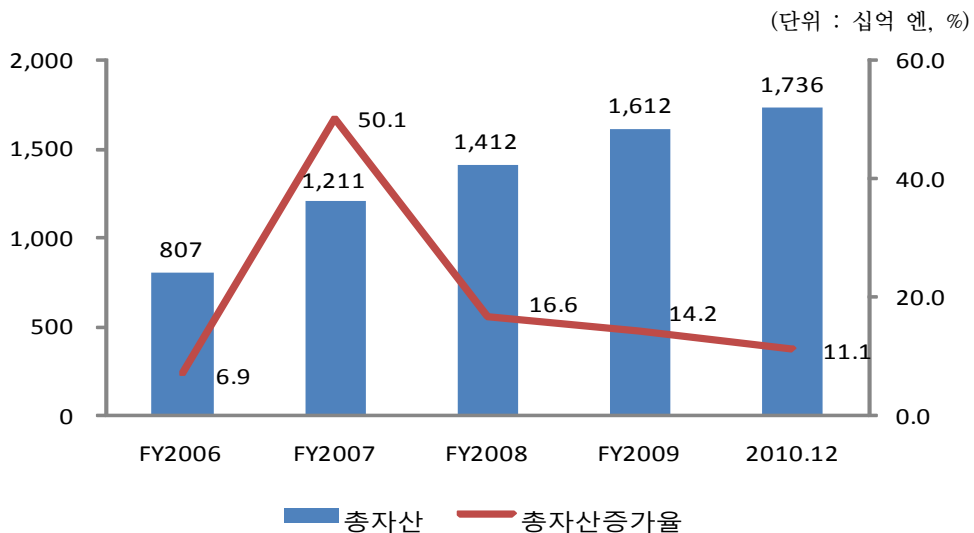


주 : 2010년말 기준
 자료 : Bankscope, 사업보고서

- 2004년 Sony Bank는 Sony의 중간금융지주회사인 Sony Financial Holdings로 편입되었으며, 2007년에는 Sony Bank Securities라는 증권사를 자회사로 편입
- Sony Financial Holdings는 2005년 JP Morgan Chase의 지분을 전량 인수한 데 이어 2008년에는 Sumitomo Mitsui 지분까지 전량 인수함으로써 단독 주주로 등극

- Sony Bank는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연금보험 등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면서 높은 성장세를 시현
 - Sony Bank는 설립초기 자산운용에 특화한 인터넷전문은행에서 가계대출, 신용카드, 연금보험 등을 취급하는 전방위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성장

〈그림 7〉 Sony Bank의 자산 및 증가율¹⁾ 추이



주 : 1) Non-consolidated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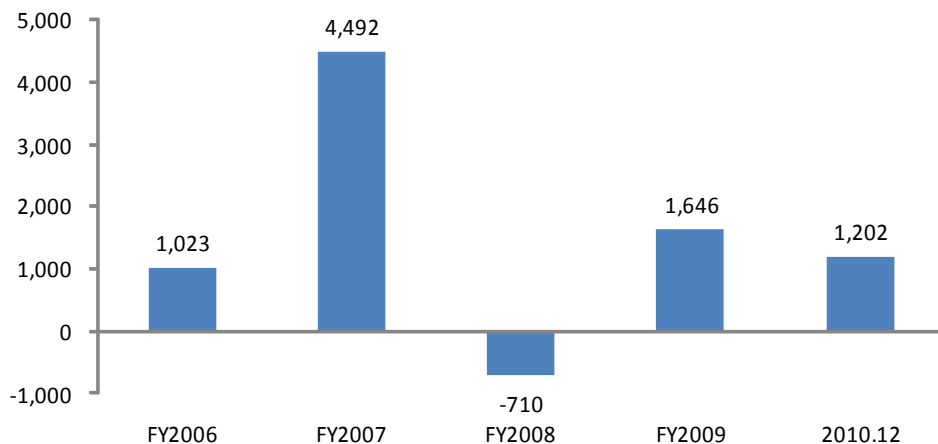
2) 전년동기 대비 기준

자료 : 사업보고서

- Sony Bank는 2006~2010년 중 연평균(CAGR) 기준 21.11%의 고성장을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2006년 8,070억 엔이었던 총자산이 2010년에는 1조 7천 4백억 엔으로 증가
 - 이는 Sony Bank가 Sony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저리의 자금을 대량으로 조달할 수 있는데다 Sony Life와 Sony Assurance 등을 통해 연금보험 등 금융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임.
- Sony Bank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일본의 경제가 침체되면서 2008년 적자를 기록했으며, 2009년 흑자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일본경제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Sony Bank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수익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Sumitomo Mitsui Banking Co.와의 결별도 수익성에 악영향

〈그림 8〉 Sony Bank의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 백만 엔)



자료 : 사업보고서

3) Egg Bank

- 1998년 영국 최대의 보험사 Prudential은 은행업 진출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인 Egg Bank를 설립
 - Egg Bank는 Prudential의 완전자회사로 설립되었으며, 지점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설립
- Egg Bank는 설립초기부터 고금리 예금상품의 제시와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 고성장을 기록했으며, 신용카드 매출과 금융상품 판매의 확대에 힘입어 설립 3년만에 흑자를 기록
 - 지점영업비용의 절감을 바탕으로 고금리 예금상품과 저금리 대출상품을 제시하면서 2000년 고객수 100만명을 돌파하였으나 좁은 예대마진과 광고비용 등으로 인해 적자상태가 지속
 - 그러나 신용카드영업의 강화와 투자신탁상품의 판매확대 등으로 비이자 수익 비중을 40%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Egg Bank는 설립 3년만인 2001년부터 흑자로 전환
- 그러나 영국에서의 성장에 고취된 Egg Bank는 2002년 프랑스로 진출했으나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면서 2004년 철수
 - Egg Bank는 예대업무에서 기록한 손실을 신용카드 사업으로 상쇄하는 영업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프랑스 고객들은 영국보다 신용카드 사용률이 현격히 낮아 적자가 지속
 - * Egg Bank는 명목예대마진이 0.5%에 불과하여 대손비용과 광고비를 고려할 경우 예대업무는 역마진이었으며, 예대고객이 신용카드와 투자신탁상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이익을 올리는 사업구조를 가짐.
 - 결국 Egg Bank는 2004년 프랑스 현지법인을 헐값으로 ING에 매각하면서 프랑스 시장을 떠났는데, 그 과정에서 총 1억 9천만 달러의 막대한 손실을 기록

● 프랑스에서의 투자실패, 신용대출 대손비용의 증가, 신용카드 매출부진 등으로 Egg Bank는 2006년부터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결국 2007년 헐값으로 Citigroup에 매각

- 2000년 지분 21%를 런던에 상장시켰던 Egg Bank는 2006년 Prudential이 기타지분을 일괄매집하면서 완전자회사로 회귀
- 2006년 시장매집 당시 시가총액 11억 파운드에 달했던 Egg Bank는 그 해 1억 파운드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2007년 5.7억 파운드의 가격에 Citigroup으로 매각

〈그림 9〉 Egg Bank의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 백만 파운드)



자료 : Banksco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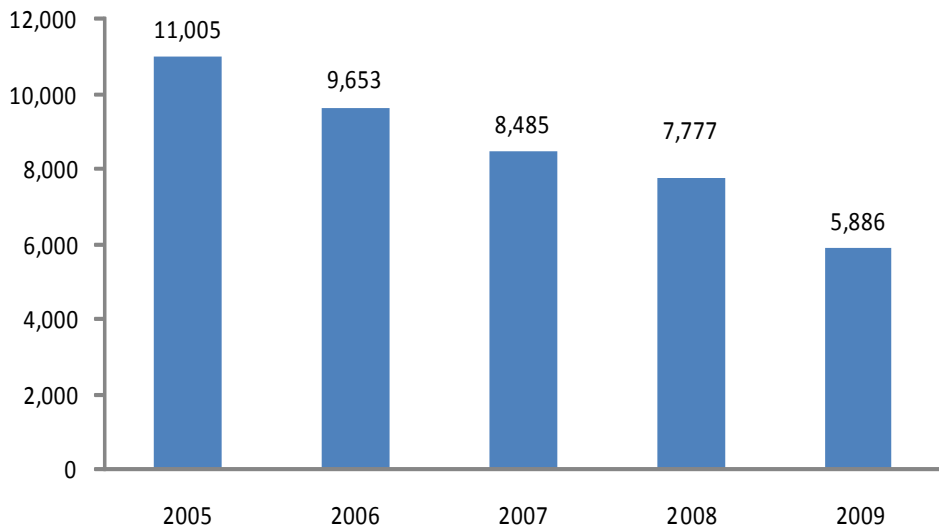
● Citigroup이 인수한 이후에도 Egg Bank의 경영실적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적자가 지속되자 Citigroup은 부실채권 매각 및 대출영업 중단으로 Egg Bank의 자산을 줄이기 시작

- Egg Bank는 Citigroup이 인수한 2007년은 물론 2008년과 2009년에도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Citigroup은 이것이 늘어나는 대손비용 때문으로 파악하고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부실채권 매각은 물론 대출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
- 이에 2005년 110억 파운드에 달하던 Egg Bank의 총자산은 2006년 96.5억 파운드, 2007년 84.9억 파운드, 2008년 77.8억 파운드, 2009년 58.9억 파운드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그림 10〉

Egg Bank의 총자산 추이

(단위 : 백만 파운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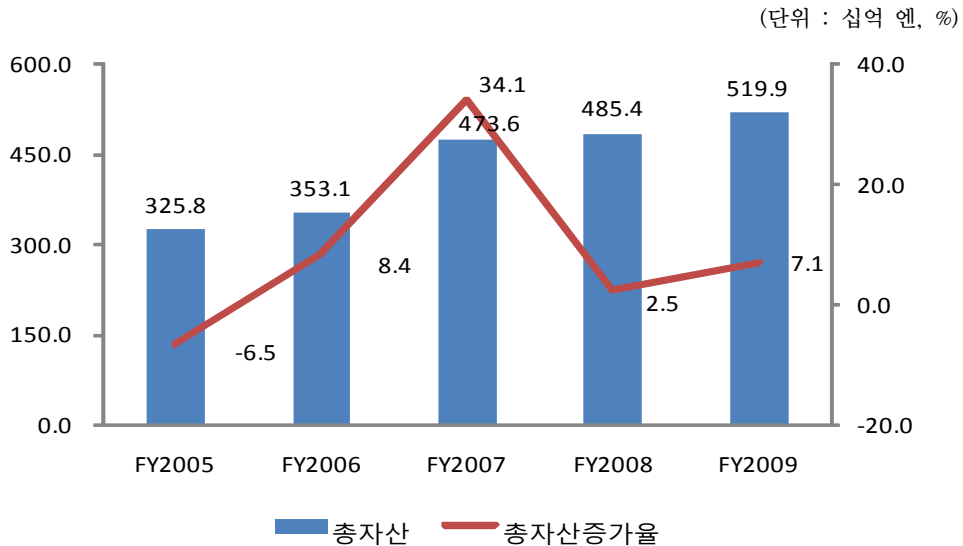
자료 : Bankscope

- 결국 Citigroup도 세계최대 인터넷전문은행인 Egg Bank의 경영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으며, 2011년 3월 Egg Bank의 신용카드 업무를 Barclays에 매각하기로 결정

4) Japan Net Bank

- 2000년 일본의 대형 은행지주회사인 Mitsui Sumitomo Banking Co.가 금융 및 산업자본들과 공동으로 출자해 일본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인 Japan Net Bank를 설립
 - Mitsui Sumitomo Banking Co.(60%), Fujitsu(10%), Nippon Life Insurance (10%), NTT(5%), Mitsui물산(5%), 동일본NTT(5%) 등이 자본금 200억 엔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일본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인 Japan Net Bank(종업원 50여명 규모)를 설립
- Japan Net Bank는 Sumitomo Mitsui의 ATM과 인터넷뱅킹, Nippon Life Insurance의 보험서비스, 경마·경륜 배팅서비스 등의 결합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임으로써 꾸준한 성장세를 시현
 - Japan Net Bank는 대형 은행지주회사인 Sumitomo Mitsui의 금융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약점을 보완했으며, Nippon Life Insurance의 보험서비스를 같은 화면에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원스톱 बैं킹 서비스까지 제공
 - 또한 Japan Net Bank는 자금이체와 같은 온라인 결제서비스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ezip@y 서비스를 개발하는 동시에 경마, 경륜 등으로의 배팅과 배당금 정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유인
 - Japan Net Bank는 FY2005~2009 기간 연평균(CAGR) 기준 12.4%의 고성장을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FY2005에 325.8억 엔이었던 총자산이 FY2009에는 519.9억 엔으로 증가

〈그림 11〉 Japan Net Bank의 자산 및 증가율¹⁾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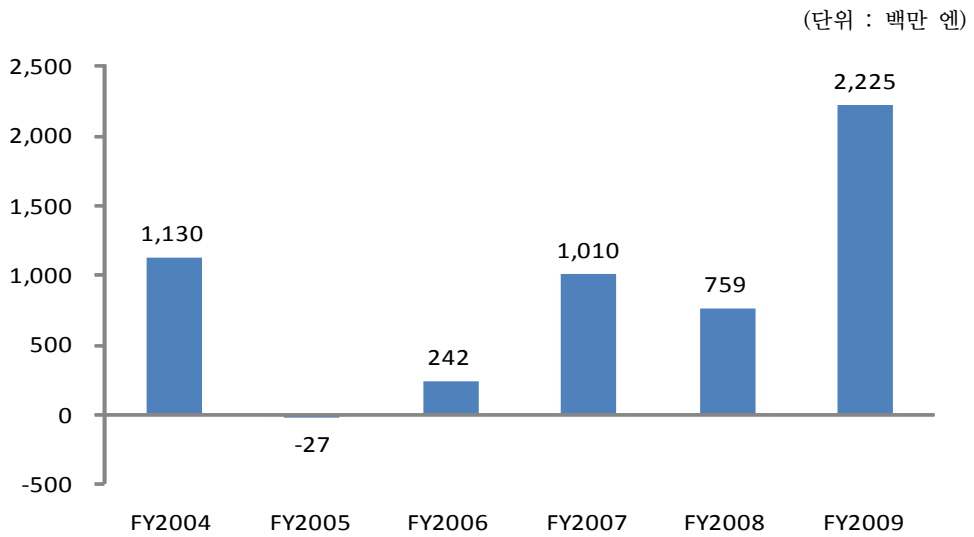
주 : 1) 전년동기 대비 기준

자료 : Bankscope

- Japan Net Bank는 FY2005에 소폭 적자를 기록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FY2006~2009 중 흑자를 기록했으며, 2006년에는 Yahoo Japan을 투자자로 유치함으로써 온라인쇼핑몰과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

- FY2005에 Japan Net Bank가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으나 170억 엔에 달하던 경상비용을 FY2006에 150억 엔으로 줄이고(11.8%), 온라인쇼핑 관련 협력을 강화한다는 전제하에 Yahoo Japan에 지분 10.5%를 매각하면서 FY2006 부터는 흑자를 기록
- 이에 따라 Japan Net Bank의 지분구조는 2011년 2월말 현재 Sumitomo Mitsui Banking Co. 61.1%, Yahoo Japan 10.5%, Nippon Life Insurance 10.4%, Fujitsu 6.9%, Tokyo Electric 3.5% 등으로 바뀜.

〈그림 12〉 Japan Net Bank의 당기순이익 추이



자료 : Bankscope

V. 시사점

-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데 일부 법적 제약이 있으나 국내기업의 해외 은행업 영위는 가능하며, 실제로 몇몇 사례가 있었음.
 - 국내 비금융회사가 해외에서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 대한 신고의무와 함께 한국은행 및 금감원으로서의 정기적 보고의무가 있음.
 - 과거 대우 형가리은행, LG 페트로은행, 한화 아테네은행 등 국내기업의 해외 은행업 영위사례가 있었으며, 한화는 지금도 헝가리에서 은행을 경영하고 있음.
- 이는 기존 네트워크와의 시너지 효과, 해외진출을 위한 첨병역할 등을 위해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은행업을 영위할 유인이 있기 때문
 - 국내기업은 해외에서 은행업을 영위함으로써 기존시설의 공동이용을 통한 비용시너지, 연계판매 등을 통한 수익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은행업을 통해 획득한 네트워크와 정보를 토대로 타 부문으로의 진출도 타진할 수 있음.
- 특히 특정국가나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는 은행업이 매우 적합하기 때문에 특별한 주력시장(target market)이 있는 국내기업의 경우 동 지역으로의 은행업 진출을 고려할 필요
 - 기업금융 과정에서 인수·합병할 가치가 있는 현지기업을 발굴할 수도 있고 소매금융 과정에서 일반 대중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질 수 있음.
 - 또한 은행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는 타 부문으로의 진출에 있어서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

- 물론 국내기업의 주력시장에서 은산분리가 엄격히 시행되고 있으면 동 국가로의 은행업 진출이 불가능하지만, EU(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제외), 일본, 인도네시아, 홍콩,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 주력시장인 경우에는 은행업 진출이 가능
 -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이 주력시장인 경우에는 지분제한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지분투자를 통해 현지은행의 주요 주주가 되는 것은 가능함.
- 그러나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기존 사업부문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가령 대우은행은 헝가리에서의 대우자동차 판매망 구축 및 할부판매와 은행업을 연결시킴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했기 때문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음.
- 또한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은행을 경영하기에 은행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내 또는 현지 은행과의 합자를 통해 노하우를 전수받을 필요가 있음.
 - 가령 Sony Bank의 경우 설립초기 은행업 노하우를 얻기 위해 Sumitomo Mitsui, JP Morgan Chase 등과 공동으로 출자했음.
- 국내 또는 현지 은행과 합작하는 경우에는 투자리스크를 낮추고 각자의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노하우도 접목시킬 수 있음.
 - 가령 Japan Net Bank는 Mitsui Sumitomo의 은행경영 노하우와 ATM, Nippon Life Insurance의 보험판매 노하우, Yahoo Japan의 온라인판매 노하우를 결부시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

- 한편 국내기업의 주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신흥 시장에서는 외국인 지분투자에 대해 단일투자자 한도와 외국인투자자 전체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국내기업이 국내은행과 공동으로 진출할 경우 우호 주주로서 상부상조할 수 있음.
 - 가령 중국의 경우 현지은행에 대해 개별 외국인 20%, 외국인 전체 25%의 지분투자 한도가 있으며, 베트남에서는 개별 외국인 10%, 외국인 전체 30%의 한도가 있음.
 - 국내기업이 국내은행과 공동으로 현지은행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외국인 전체 한도까지 지분을 인수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해당은행과의 공조체제도 구축할 수 있음.

- 합작의 경우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독자적 은행업 영위는 합작 단계를 거친 이후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
 - 국내 일반기업이 은행을 제대로 경영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동안 은행과의 합작과정이 필요하며, 은행업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된 이후 독자생존을 모색

참고문헌

- 이병운, 「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금융연구원, 2006.
- KOTRA, 『2011 해외진출 종합가이드』, 해외진출지원센터, 2010.12.
-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50호, 2009.8.26.
-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제10361호, 2010.6.8.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37호, 2011.1.24.
- “보험업법”, 법률 제10394호, 2010.7.23.
- “보험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37호, 2011.1.24.
- “상업은행의 영업망에 관한 규정의 공포에 관한 규칙”, 베트남 중앙은행장,
- “싱가포르은행법”, 세계법제정보센터
- “외국환거래법”, 법률 제9617호, 2009.4.1.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11.1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61호, 2010.6.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37호, 2011.1.24.
- Allison, G., “Japan's Postwar Histor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 Farhoomand, A., “Japan Net Bank: Japan's First Internet-Only Bank,”
15th Bled Electronic Commerce Conference, 2002.
- Lewis, M., “Banking, Securities, and Commerce: An European Perspective,”
Cato Journal, Vol.10, No.2, 1990.
- Morck, R., “A Frog in a Well Knows Nothing of the Ocean: A History of
Corporate Ownership in Japan,” *NBER Working Paper* c10274, 2005.
- Odagiri, H., “Technology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Japan,”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Santos, J., "Banking and Commerce: How does the United States Compare to the Other Countries?," *Economic Review*, 1997.

"Ac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Concerning Banking," amended in 1998.

"Banking Regulation Act," India, amended in 2007.

"Banking Regulation Survey," World Bank, 2007.

"Hong Kong Banking Ordinance," www.ukincorp.co.uk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Commercial Banks," amended in 2003.

"Law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Banks and Banking Activities," amended in 1996.

"On Banks and Banking Activity in the Republic of Kazakhstan," amended in 2007.

Abstract

Issues Involved in the Conducting of Commercial Banking with Industrial Capital

Christopher Byungho Suh

The banking and corporate sectors are strictly separated within Korea. However, it is possible for ordinary Korean companies to own and run a commercial bank if it is done outside Korea, and some industrial firms have been operating banks in Europe.

This paper looks into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corporate entry into commercial banking. Relevant rules and regulations in Korea, Asia, Europe and the US are then examined to give an overview of how combinations of banking and commerce are treated in various locations. Finally, lessons are derived from case studies of corporate-run banks, namely Daewoo Bank, LG Petro Bank, Hanwha Bank, GMAC Bank, Sony Bank and Japan Net Bank.

한국금융연구원 자료판매 코너

총판 : 정부간행물 판매센터(02-394-0337)

지 역	서 점 명	전 화 번 호	위 치
서 울	본사 직영서점	(02) 734 - 6818	한국언론재단빌딩 www.gpcbooks.co.kr
	교보문고(본점)	(02) 397 - 3628	광화문 사거리 www.kyobobook.co.kr
	영풍문고(본점)	(02) 399 - 5632	종각 www.ypbooks.co.kr
	(강남점)	(02) 6282 - 1353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리브로 올지	(02) 757 - 8991	을지로 입구 www.libro.co.kr
	서울문고 (반디앤루디스)	(02) 6002 - 6071	삼성역(무역센터 내)
부 산	영광도서	(051) 816 - 9500	서면로타리
	동보서적	(051) 803 - 8000	태화백화점 옆
광 주	삼복서점(운남점)	(062) 956 - 3888	신사 사거리
인터넷서점	yes 24	www.yes24.com	
	알라딘	www.aladdin.co.kr	

※ 위 코너 외에 교보문고 및 영풍문고는 각 지방 분점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서 병 호(Christopher Byungho Suh)

■ 약력

- 서울대학교(서양사학 학사)
-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경제학 석사)
-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경제학 박사)
-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 강의 및 연구조교
- Mitsui Financial Research Center 연구원
- 현)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산업·경영연구실 연구위원

■ 주요 논저

-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현황 및 과제(KIF금융리포트, 2011.2.)
- 국내외 은행의 CDS프리미엄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공저, KIF연구보고서, 2010.10.)
- 미국 금융개혁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공저, KIF금융리포트, 2010.9.)
-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공저, KIF정책조사보고서, 2010.4.)
-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개선방안(공저, KIF정책조사보고서, 2010.2.)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KIF정책조사보고서, 2009.6.)
- Employment Considerations in Corporate Reorganization, *Working Paper, Financial Economics Series* No.2009-01, KIF, 2009.3.
- 국내 금융회사의 투자는행업무 활성화 방안(공저, KIF금융리포트, 2008.1.)
- Bargaining Power and Delay in Bankruptcy Negotiation, *Working Paper, Financial Economics Series* No.2006-02, KIF, 2006.12.)

KIF 금융리포트 2011-04

국내기업의 해외 은행업 진출에 대한 검토

2011년 4월 25일	인 쇄
2011년 4월 29일	발 행
발 행 인	김 태 준
발 행 처	한 국 금 융 연 구 원

서울시 중구 명동 1가 41 은행회관 5·6·7·8층
전 화 : 3705-6300 FAX : 3705-6309
<http://www.kif.re.kr> : wmaster@kif.re.kr
등록 제1-1838(1995. 1. 28)

